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22190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18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221908 판결

전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 종결 2019. 12. 18.

판결 선고 2020.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D 및 그의 형 E은 2015.1. 23.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서 원고의 보험모집대행업체인 H를 개설하여, E은 지사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D은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 14.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H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D, E 및 피고의 보험모집수당 편취 등

1) D, E과 피고는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2015. 3. 26.부터 2015. 10. 23.까지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통장만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에 정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 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 I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24,948,543원, 피해자(주) J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629,787원, 피해자 (주)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4,959,240원을 각각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46회에

걸쳐합계149,537,570원을 편취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경과

1) D은 위 나. 항 등과 같은 범죄행위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2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3. 16.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010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 및 상고심(2017도15258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E은 위 범죄행위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0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40호로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5. 11.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노3435호로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8. 3.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요청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등에 따른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53,914,613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에 기하여 1,204,741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수수료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서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실효, 해약,

청약 철회된 보험계약의 반환 수수료 58,407,655원 중 원고가 L회사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행보증보험금 5,000,000원 및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회수한 1,204,741원을 공제한 나머지 52,202,914원(= 58,407,655원 - 5,000,000원 - 1,204,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D, E와 공모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E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매월 2,500,000원 내지 3,000,000원씩 대가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환수수료 상당액인 52,202,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위촉계약 내지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 환수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규정집을 제공받는 등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수수료환수규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액 내지 피고의 이득액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고, 피고는 입금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E 및 D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또한 E, D의 보험금 대납 등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는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11.경에는 피고 및 E, D의 보험금 대납 등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는 '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실효, 해지, 해약된 경우, 민원제기 등으로 해지, 해약되거나 청약철회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제28조), 수수료 환수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설계사수수료 제규정"에 따른다(제28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사수수료 제규정" 등 관련 규정집을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는 등 수수료 환수의 개별 사유나 환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수수료 환수 관련 규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내지 급여 등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급부에 해당할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던 점(제19조), 그런데 피고는 E,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가입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보험사인 (주) I, (주) J, (주) K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상당손해액을 보험대리점인 원고에게 지급할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의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각각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변제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피해 보험사들에게 수수료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했음을 이유로 위변제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액 내지 구상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 보험사 (주) I 으로부터 합계83,720,246원을 환수당하였는데, 그 중 보험모집인인 피고가 부담할 환수금은 52,864,823원인 사실, 원고는 피해 보험사 (주) J 으로부터 합계 10,341,106원을 환수당하였고, 그 중 피고가 부담할 환수금은 5,542,83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환수금 합계 58,407,656원(= 52,864,823원 +5,542,833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이행보증보험금 및 강제집행 환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52,202,914원(= 58,407,656원 - 이행보증보험금 5,000,000원 - 강제집행 환수액 1,204,741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1.경 피고, D, E의 보험료 대납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그 무렵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2019.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18. 무렵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내지 손해액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3년이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 내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3. 20. 기준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5. 11.경 피고 등의 보험금 대납 및

보험모집수당 편취행위를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인 D은 수사단계에서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등이 없다고 다투다가 2017. 3. 16.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2017. 5. 11.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 등의 보험모집수당 편취행위나 이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02,9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 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민정

1) 계산상 52,202,915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